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346

발의연월일: 2020. 7. 24.

발 의 자:임이자·김영식·박대수

김형동 • 이명수 • 추경호

송언석 · 김성원 · 한기호

서일준 의원(10인)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내수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임.

특히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현재의 경제적 위기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신속한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 한시적인 특별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기준법」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같은 법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취업의 장소 외에 자택 등 원하는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전산장비, 프로그램 등 근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제7조).
- 다. 사용자는 사업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 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집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강제 휴업을 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
- 라.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준기간에 미달하더라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사업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로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합산하여 180일인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9조).
- 마.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근로자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휴교·휴업 또는 휴원 중인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및 재택근무를 통한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

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으로 인한 국 내외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내수경기의 회복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2020년 3월 11일에 세계적 유행을 선포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을 말한다.
-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내수경기의 침체 및 경제성장률 하락 등 경제적 위기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특례보 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연장 근로에 대한 특례) ①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그 기간, 대상근로자 범위에 대하여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대표자와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같은 법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이하 "한시특별연장근로"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한시특별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한시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하여 서면 합의 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휴식시간에 대한 특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5조에 따른 한 시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휴식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

야 한다.

- ②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조(취업의 장소에 대한 특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에서 정한 취업의 장소 외에 자택 등근로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근무(이하 "재택근무"라 한다)할 것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전산장비, 프로그램 등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와 근 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택근무에 필요한 지원을 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재택근무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정부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휴업수당에 대한 특례) ① 사용자는 사업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집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강제휴업을 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

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휴업수당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휴업수당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대한 특례) 「고용보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사업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경우에는 그로 인하여계약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및「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가「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에 미달하더라도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인 것으로 본다.제10조(가족돌봄휴가에 대한 특례)① 근로자는 본인의 자녀를 돌봐야하는 경우로 다음 각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특
 - 1.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는 경우 근로자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휴교·휴업 또는 휴원 중인 경우

별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4항제2호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 3. 사업·업무의 성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제7조에 따른 재택근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
-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특별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특별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특별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사용자는 특별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특별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 ⑥ 정부는 사업주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특별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벌칙) ① 제5조제4항, 제8조제1항 또는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과태료)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이 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가 정부에 비용 부담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2021년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9조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2021년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에 따른 특별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의 종료일은 이 법의 유효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